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2편 제4장 (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)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야간작업 등에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건설공사현장의 야간작업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터널공사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-96호 (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-NATM공법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야간작업 등"(이하 "야간작업" 이라고 한다)이라 함은 주간작업에 비하여 특히 기온 또는 조명 등 작업환경의 변화에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는 작업이며, 작업시간은 통상 당일 일몰시 부터 다음 날 일출시 까지를 말한다.
 - (나) "조도"라 함은 빛에 의한 밝기의 정도, 면이 받는 광속의 밀도를 말하며 단위는 럭스(Lux)를 사용하다.
- (2)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